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축주의 대가 지급 보증 의무화 등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77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0807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건축사협회·건설사업자단체의 표준계약서 작성·보급·활용 (안 제15조제4항 신설)	3
나. 건축주의 설계자·공사감리자에 대한 대가 지급 보증 (제15조의2 및 제113조제1항 신설)	7

I.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0807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2. 12.

다. 회 부 일 : 2025. 2.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관계자에게 성실의무 및 상호 간 위법·부당한 행동 강요 금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관계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표준계약서로서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미국의 경우 사업자 단체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를 개발·보급하여 계약자 상호 간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민간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민간이 발주하는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가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는 많으나, 건축주는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불공정한 대가 미지급 관행으로 건축사가 업무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 분쟁과 소송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관련 분야로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 건설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에서 민간 발주자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건축주도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관한 대가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건축 서비스에 대한 상호 동등한 입장의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제15조의2 및 제113조제1항 신설).

3. 검토의견

가. 건축사협회·건설사업자단체의 표준계약서 작성·보급·활용 (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할 수 있다. ④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5조제4항은 「건축사법」 제31조1)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1) 「건축사법」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건축사협회”라 함)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²⁾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이하 “건설사업자단체”라 함)가 건축관계자³⁾(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건축법」 제15조⁴⁾는 건축관계자에게 성실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건축관계자 간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는 건축관계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협회·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건축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급하는 현행 표준계약서⁵⁾로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⁶⁾가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건축사협회·건설사업자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계약자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계약서도 건축사협회·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른 내용의 표준계약서가 보급되는 경우 일반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5)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계약서는 아래와 같음.

-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6)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서비스사업 발주방식, 건축과정에 참여자가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표준 계약서의 종류는 한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에서 배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표준계약서 심사 주체로 포함하는 것은 유사 입법례⁷⁾와 맞지 않다는 입장임.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IA)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유형과 발주 방식에 맞춰 여러 시리즈의 계약서를 개발·보급⁸⁾하여 계약자 상호 간 공정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민간이 자발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 서비스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순기능적인 측면과 아울러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유사 입법례)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8) 김소라, 「미국 AIA 표준계약서식에 나타난 건축사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61호, 2018년, p.240

- 미국건축사협회(이하 AIA)에서 발간하는 표준계약서는 1888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꾸준히 개정되고 추가되어 현재 180여개의 계약서식이 존재한다.

나. 건축주의 설계자·공사감리자에 대한 대가 지급 보증
(제15조의2 및 제113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설계·공사감리 대가의 지급보증 등) ①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건축주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건축주도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관한 대가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는 대가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건축주는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대가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대가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

현행	개정안
	<u>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중지할 수 있다. 건축주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u> <u>④ 제3항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축주는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중지나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u> <u>⑤ 제1항에 따른 대가의 지급보증, 담보 제공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113조(과태료) <신설> ① ~ ④ (생략)	제113조(과태료) 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u>설계·공사감리 대가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설계자·공사감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건축주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건축주도 설계자·공사감리자에게 설계·공사감리에 관한 대가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안 제15조의2 신설), 설계·공사감리 대가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1항 신설).

현행 「건축법」 제15조제2항⁹⁾은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를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에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이 발주하는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가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는 많으나, 건축주가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불공정한 대가 미지급 관행으로 건축사가 업무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9) 「건축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주에게 설계·공사감리에 관한 대가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설계자·공사감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설계자·공사감리자의 이행보증 및 건축주의 대가 지급보증 여부는 시장원리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자율적인 계약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¹⁰⁾를 통해 상호 간 이행보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체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개정안의 입법목적 실현과 함께 바람직한 시장관행 구축 및 설계품질 확보 등을 위해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가 설계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¹¹⁾”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함(아래 그림 참고).

10)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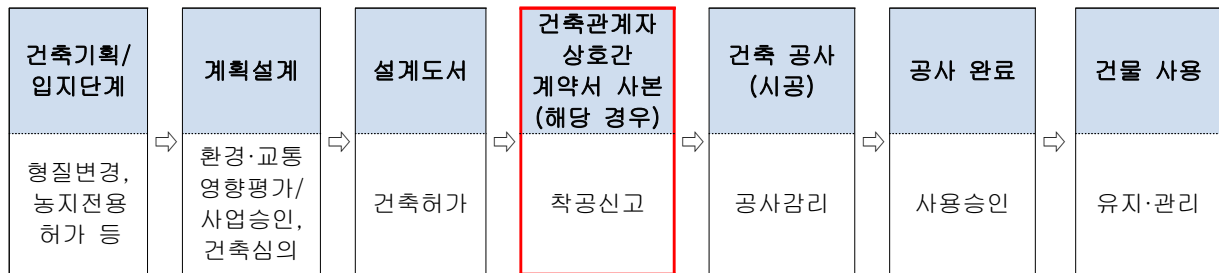
11) 감리의 경우,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감리비용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 ⑩ (생략)

⑪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절차 흐름도 】



※ 자료: 김동근·정동근 공저, 「건축법 이론 및 실무」 (2016년), 진원사, p.231

한편,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¹²⁾의 경우, 건설공사 및 소방시설

1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할 때 발주자 역시 의무적으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³⁾.

둘째,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만 규정하고 적용례를 두지 않고 있는바,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¹⁴⁾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문 의 처
02)6788-5585

-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방법이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촉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3)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유사 입법례로 제시한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투입 등 초기 투자부담을 고려하여 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작업의 성격이 다른 설계·감리와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14)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847면

- 적용 대상이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 어떤 특정 단계나 시점의 사람이나 사항을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때는 적용례를 두면 그 적용 대상이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고, 특히, 과거부터 신법 시행 당시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어느 시점이나 단계부터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례를 두어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법」에 지급보증 조항을 신설할 때에도 적용례를 규정하였음.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1. 건축물 명칭 :

2. 대 지 위 치 :

3. 설 계 내 용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기타

1) 대지면적 : _____m²

2) 용 도 : _____

3) 구 조 : _____

4) 층 수 : 지하 _____층 지상 _____층

5) 건축면적 : _____m²

6) 연면적의 합계 : _____m²

4. 계 약 면 적 : _____m²

5. 계 약 금 액 : 일금 _____ 원정(₩ _____): 부가세 별도

200 년 월 일

“갑”과“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건축주 “갑”

설계자 “을”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상호/건축사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주 소 :

전 화 / Fax :

전 화 / Fax :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1. 계약건명 :
2. 대지위치 :
3. 공사개요 :
 - 1) 대지면적 : ㎡
 - 2) 건축면적 : ㎡
 - 3) 건축연면적 : ㎡
 - 4) 용 도 :
 - 5) 층수 / 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
 - 6) 건축허가일 :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
 - 7) 공사기간 : 20 년 월 일(착공예정일)~20 년 월 일
4.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세 별도

- 20 년 월 일

“갑”과 “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